대법원 2020도4246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강간 미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5. 28.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24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9. 5. 28. 06:24경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정○○(여, 20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의 뒤를 밟아 같은 날 06:30경 약 200m 정도 떨어진 △△△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후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였음
-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원룸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약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고 휴대전화 라이트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

아내려고 눌러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 원룸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돌아갔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주거침입 유죄(징역 1년), 주거침입강간 이유무죄 ➡ 피고인 항소 (양형부당), 검사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 **원심**: 주거침입 유죄(징역 1년), 주거침입강간 및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주거침입강제추행 각 이유무죄 ➡ 검사 상고(사실오인, 법리오해)
 - 피고인에게 법률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려움
 -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사실만을 기초로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
 의를 추단하기 어려움
 -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움
 -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개시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 부 (소극)
-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주거침입 유죄,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 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및 실 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